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6월 30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60호

###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1(특별휴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37조의1(특별휴가)**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특별휴가 지침을 내려준 경우 대표이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휴가의 결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화성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